

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운영위원회 위원장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5년 3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제237회 정례회

○ 2005년 3월 15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, 제안설명 및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윤숙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
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수를
자율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에서
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함과 아울러

- 2005년 1월 1일부터 제·개정되는 법제명을 한글맞춤법의 기준에 의한 띄어쓰기, 법령 명칭표기 등의 개선으로 정비 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(회기) 삭제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
4. 토론요지 : "생략"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"없음"

7. 타 필요한 사항 : "없음"

8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"를
"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「지방자치법」으로, "동법시행령"을
"동법 시행령"으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	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「지방자치법」 동법시행령
제3조(회기)	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.	제3조(회기)	<삭 제>	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자치법

- 공포일자 :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
- 내 용 :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.

第41條 (開會·休會·閉會와 會議日數) ①地方議會의 開會·休會·閉會와 會期는 地方議會가 議決로 이를 정한다.

②定例會의 會期는 年 2회를 合하여 市·道議會의 경우 40日 이내, 市·郡 및 自治區議會의 경우 35日 이내로 하고, 臨時會의 會期는 15日 이내로 한다.<改正 1991·12·31, 1994·3·16, 1999.8.31>

③年間 會議總日數는 定例會 및 臨時會를 合하여 市·道에 있어서는 120日, 市·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80日을 초과할 수 없다.<改正 1989·12·30, 1994·3·16, 1999.8.31>

□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(제정 2000. 9. 22 조례 제2606호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"령"이라 한다)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.

제4조(집회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.

제5조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,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 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운영·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